

서울의 중심, 청림의 중심 종로



종로구

수신 종로구의회 의장

(경유)

제목 **내자·필운 제2-1지구 동의서 철회 민원 검토 결과 회신**

내자·필운 제2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과 관련, 제출된 동의서에 대한 철회 요청 민원과 관련, 우리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의서 철회 요청 민원 개요 -

1. 사업명 : 내자·필운 제2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동의서 현황 : 토지등소유자 111명 중 75명 동의서 제출
※ 법적요건: 토지등소유자의 2/3이상 동의로 요건 충족
3. 제안자 : (주)내자필운PFV 외 토지등소유자 110인
4. 추진경과
 - 가.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: 2024.09.20.
 - 나. 주민공람공고 : 2024.10.11.~11.11.(30일이상)
 - 다. 주민설명회 개최 : 2024.11.05.
 - 라.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 : 2024.11.08.
 - 마. 의견청취 후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요청 예정
5. 민원요지
 - 가. 민원요지
 - 필운동 289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철회요청
 - 나. 검토결과
 - 동의서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"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·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."고 규정되어 있음
 -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제출된 동의서가 수사기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,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5조 벌칙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음.
- 또한, 수사기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동의서 1건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제안 법적 요건인 2/3이상의 동의율은 충족됨. 끝.

종 로 구



주무관 **정현희** 도시개발팀장 **김두수** 도시개발과장 **박정훈** 도시재생국장 **11/21**
임근래

협조자

시행 도시개발과-5266 (2024. 11. 21.) 접수 구의회사무국-7969 (2024. 11. 21.)
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, 9층 도시개발과 / <https://www.jongno.go.kr>
전화 02-2148-2672 /전송 02-2148-2672 / starhh@seoul.go.kr / 비공개(5)